

# 핵심 제도 알아보기

제 도	2023 직선제
<p>선거인명부 등록 시 휴대전화번호 필수 제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명부 누락자 방지, 조합원에 대한 1:1 선거 및 후보 홍보, 전자투표 상시 전환을 위해 모든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의무 등록받음.(개인정보보호법 및 노조법 검토 완료) 단, 휴대전화번호 미등록이 곧 선거권 박탈은 아님</li> <li>●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절대 취합하지 않음</li> <li>●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목록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누구라도 열람 불가하게 암호화 저장 시스템 구축</li> <li>● 조합원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명부를 산별노조(중앙)나 연맹에 제출하지 않고 단위조직(단위노조)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(산별노조(연맹)와 협의)</li> <li>● 2020년 선거 당시 80만명 이상의 휴대전화번호 취합했음. 클라우드서비스 사용, 자체 선거관리시스템 구축, 휴대전화번호 암호화 저장, 계정별 권한 관리 등 강력한 보안 조치를 통해 1건의 유출 사고도 없이 직선을 완료하고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폐기함</li> </ul>
<p>선거인명부 취합·확정 기간(약 60일) 및 누락자 방지 제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선거인명부 등록 (8.28 ~ 9.22)</li> <li>● 전 조합원 명부 확인 URL 모바일 메시지 발송</li> <li>● 명부 등재 확인 ARS 전화 운영</li> <li>● 선거인명부 열람</li> <li>● 이의 및 재심 신청에 따른 명부 정정</li> <li>● 명부 누락자 최종 구제에 따른 명부 정정</li> <li>● 선거인명부 확정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명부 등재 확인 URL 및 ARS 전화는 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 구제 신청 마감일까지 유지·운영</li> </ul> </li> </ul>
<p>의무와 권리의 일치 완성 - 선거권 부여 기준 최종 확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단위조직 별 맹비 납부현황 보고에 따른 단위조직 별 선거권 부여</li> <li>● 2023년 6월분 ~ 9월분 중 마지막 월분 납부자 수를 각 단위조직 별 선거권자 수로 인정함</li> <li>● 임금받지 못하는 사유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, 선거권 부여</li> <li>● 손배가압류·대량해고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, 중집 의결로 선거권 제한 유보</li> <li>● 가맹조직을 통해 미납분에 대한 분납계획서 제출 시 선거권 제한 유보</li> <li>● 축소납부 단위조직은 최근 6개월분 맹비 납부 평균 인원만 선거권 부여</li> </ul>
<p>현장투표 관리의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투표소 선거인이 11인 이상이어야 현장투표 실시 가능</li> <li>● 현장투표 관리자인 현장선관위원(선거사무원) 미선정 또는 미보고 시 전자투표로 강제 전환 조치</li> <li>● 현장투표의 일시장소 미의결 또는 미보고 시 전자투표로 강제 전환 조치</li> </ul>

## 안정적인 전자투표 시스템

- 민주노총서버, 전화국서버, 외부업체서버 등 물리적 서버가 아닌, 클라우드 서버(AWS)를 이용한 전자투표 시행으로 트래픽 장애 방지
- 클라우드 서버에 모바일 메시지 발송시스템을 구축
- 모바일투표 시스템 매일 24시간(0시 ~ 4시 제외) 운영, 투표 제약 조건 최소화
- 모바일투표 시 모든 선거인에게 개인별 고유한 투표 접속주소(URL) 부여하고,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절차를 시행해 대리투표 가능성 최소화
- 모바일메시지 발송 등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사무실 내 전용 컴퓨터에서만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기술적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
- 단위조직 동시선거를 포함한 모든 전자투표 비용은 민주노총이 부담함

## 보다 강화된 참정권 보장장치

-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단위조직(투표구)의 휴대전화 미보유 조합원은 이메일투표 허용, 휴대전화와 이메일 둘 다 없는 조합원은 우편투표를 허용
- 현장투표소 설치하기 힘들고 모바일·전화·인터넷 송수신도 불가한 조합원에게 우편투표 허용
- 현장투표를 신청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(전체 선거일이 남아있을 경우) 전자투표로 긴급 전환 가능
- 결선투표 시 현장투표 일시·장소를 재수립하기 힘든 곳은 전자투표로 긴급 전환 가능
-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하여 스팸 차단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

##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들

- 민주노총, 민주노총지역본부, 민주노총지역지부(직선제 채택하는 경우), 산별노조(연맹), 단위조직(단위노조)이 민주노총 직선 시스템을 활용한 동시선거가 가능하도록 하여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조성
- 현장투표소 선관위원 미선정 또는 미보고에 따른 전자투표로의 강제 전환 시 휴대전화번호 미등록자 재적에서 제외 조치
- 현장투표의 일시장소 미의결 또는 미보고에 따른 전자투표로의 강제 전환 시 휴대전화번호 미등록자 재적에서 제외 조치
-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선거일 종료시까지 조합탈퇴·징계에 따른 선거권 박탈자의 재적 제외 조치 상시 가능
- 전자투표(모바일·ARS)의 본인인증 완료 뒤 투표 중단 상태에서 최종 선거일 종료될 시 투표율에는 산입되고 무효처리 집계 제도화
- 선거일 기간 전자투표(모바일·ARS)의 미투표자 목록(전화번호 제외)의 산별노조(연맹) 또는 지역본부에 제공 가능 (공식 요청 및 중앙선관위 의결을 전제로)
- 산별노조(연맹)마다 조합원 근무 환경을 고려해 모바일 메시지 발송 및 ARS 투표 안내 시간대를 달리 적용.
- 선거일 기간 가맹조직별, 지역본부별, 단위조직별, 투표소별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
- 선거일 기간 종료 날 오후 투표율 50% 미달 시 1일 내지 5일 한도 내에서 중앙선관위 직권으로 전국 또는 특정 지역 연장투표 실시